

##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

제출년월일 : 1999. 9.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도로법('99.2.8) 및 동법시행령('99.8.6)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무를 조정하고,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도로법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5호 및 제7호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 및 일부삭제
  -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한다”로 신설
  - “별표1의 제6호의 경우,”를 삭제
- 재해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
  -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 도로법 제44조제4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 도로법 제80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신설)
- 도로법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관계 법령발췌 : 따로붙임

- 도로법 제43조, 제44조, 제80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 별표 2
- 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

##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한다.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중 “별표1의 제6호의 경우,”를 삭제한다.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1중 제1호 및 제2호의 점용물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1.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0.1m 이하
	직경0.1m 초과 0.2m 이하
	직경0.2m 초과 0.4m 이하
	직경0.4m 초과 0.6m 이하
	직경0.6m 초과 0.8m 이하
	직경0.8m 초과 1.0m 이하
	직경1.0m 초과 2.0m 이하
	직경2.0m 초과 3.0m 이하
	직경3.0m 초과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0.1m 이하
	직경0.1m 초과 0.2m 이하
	직경0.2m 초과 0.4m 이하
직경0.4m 초과 0.6m 이하	
직경0.6m 초과 0.8m 이하	
직경0.8m 초과 1.0m 이하	
직경1.0m 초과 2.0m 이하	
직경2.0m 초과 3.0m 이하	
직경3.0m 초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조 정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② ③(생략)</p> <p>④-----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p> <p>(신설)</p> <p>⑤(생략)</p> <p>⑥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p> <p>⑦(생략)</p> <p>⑧(생략)</p> <p>제6조(점용료의 감면)①(생략)</p> <p>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p> <p>1.(신설)</p> <p>2.(신설)</p> <p>3.(신설)</p> <p>③(생략)</p> <p>④(신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② ③(현행과 같음)</p> <p>④-----아니한다.</p> <p>⑤ <u>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 한다.</u></p> <p>⑥(현행제5항과 같음)</p> <p>⑦지하점용물-----</p> <p>⑧(현행제7항과 같음)</p> <p>⑨(현행제8항과 같음)</p> <p>제6조(점용료의 감면)①(현행과 같음)</p> <p>②-----</p> <p>-----<u>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u></p> <p>1.<u>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u></p> <p>2.<u>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u></p> <p>3.<u>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u></p> <p>③(현행과 같음)</p> <p>④<u>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u></p>

현행	조정
<p>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10조(변상금의 징수)----- -----의한----- -----의 100 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 -----</p>

## 점용료산정기준개정

현행				개정 (안)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제1항 관련) (금액단위 : 원)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제1항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1.진주, 공중진화, 송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진주			600	1.진주, 공중진화등 지상시설물	진주, 가로등 이와 유사한 것			600
	진주와 유사한 것	1개	1년	900		번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900
	공중진화			24,100	공중진화			24,100	
	송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송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현				개				정 (안)			
2.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150	2.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배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벤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m	1년	직경0.1m이하	150
		직경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3.0m초과			5,250					직경3.0m초과	5,250
	기타의 관	길이 1m	1년	직경0.1m이하	200	이스압카, 압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m	1년	직경0.1m이하	200	
				직경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3.0m초과	7,850	직경3.0m초과	7,850								

[ 法令 拔萃 ]

[ 道路法 ] <1999. 2. 8 법률제5894호 개정>

第43條(占用料의 徵收)①管理廳은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基準등 占用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國道(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除外한다)인 경우 에 는 大統領令으로, 기타의 道路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改正 93.3.10, 99.2.8)

③削除 (70.8.10)

第44條(占用料 徵收의 制限)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이 다 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依하여 第 4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10)

1.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경우
2. 災害 기타特別한 事情으로 본래의 占用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
3. 國民經濟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事業을 하는 경우
4. 住宅에 出入하기 위하여 通行路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營利目的이 아닌 경우(新設 99.2.8)

(本條改正 76.12.31)

第80條의2(辨償金의 徵收)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道路를 占用한 者에 대하여는 그 占用期間에 대한 占用料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金額을 辨償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그 徵收方法은 道路占用料徵收의 예에 依한다.(改正 99. 2. 8)

(本條新設 76.12.31)

(本條題目改正 99.2.8)

[도로법시행령]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 개정>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3. 8.14)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구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개정 94.12.23)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4.12.23)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9.16, 94.12.23, 99.8.6)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별표 2](개정 96.7.1, 99.8.6)

점용료 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 관련)

※ 비고란중 제5호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1996. 7. 23 건설교통부령 제72호>

제21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3.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